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61,380,317	22,841,410
일반회계	739,978,323	22,199,350
특별회계	21,401,994	642,060
기타특별회계	21,401,994	642,06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8,336,199	550,086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	6,000	18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10,866	32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14,423	33,433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1,934,506	58,035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18,000,000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1,0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1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분한도액은 2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